



부업자에 제출한 다음 제1조에 표시된 피보증채무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.

제1조(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)

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.

|           |   |
|-----------|---|
| 채 무 자     | 성 명 : 푸에스대북(주)<br>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원사로 57길 13, 5층 (삼성동, 프레스원)   |
| 거 래 약 정   | 2018년 9월 18일자 약정서   |
| 채 무 금 액   | 금사천육백만원* 원 (₩46,000,000*)   |
| 상 환 기 일   | 2019년 3월 18일  |
| 이 자 율     | 연 // %  |
| 지 연 배 상 금 |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(24) %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. |

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.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.
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증기간                | 2018년 9월 18일부터 2018년 3월 18일까지 |
| 피보증채무금액             | 금사천육백만원* 원 (₩46,000,000*)     |
| 보증의범위<br>(보증채무최고금액) | 금오천구백팔십만원* 원 (₩9,800,000*)    |
| 연체이자율               | 24 %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약사항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제2조(계약서의 교부) ①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계약서 및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보증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,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서 및